

긴급자동차지정증					지정번호
①성 명		②생년월일			
③주 소					
④자동차종류		⑤차 명		⑥형 식	
⑦자동차등록 번호		⑧원 동 기 번호		⑨용 도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자동차를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(시·도경찰청장) 인</p>					

2106-140일(1)

130mm×95mm

85. 1.28 승인

(인쇄용지(특급) 70g/m²)

주 의 사 항

1. 지정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.
2. 이 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 3조제4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.
3. 이 증은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.
4. 지정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